승선정원 명

승객 준수사항

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. 승객은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 인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.
- 2. 낚시어선에 승선할 때에는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(선원)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 - 가. 낚시어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 - 나. 낚시어선업자(선원)의 구명동의 착용 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
 - 다.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
 - 라. 영업시간외 항해, 영업구역 외 지역의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
 - 마. 인명구조장비나 기타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
 - 바.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, 무단취사, 야생 동식물 등을 반출하는 행위
 - 사.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
 - 아. 시제한기준 (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 1, 2)를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
- 3. 기상악화 등으로 안전대피 또는 철수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승선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하며, 또한 영업금지구역에 하선을 요구 하여서는 안된다.
- 4.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.
- 5.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한 포획·채취금지 체장(체중) 이하의 수산생물은 포획·채취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.

